

청주지방법원 2025. 2. 11 선고 2024가단8096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청주시

소송대리인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5. 2. 11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B와 C 사이에 2020. 6. 2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B은 C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. 6. 24. 접수 제842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송경근

별지